제85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국가공무원법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추가(강화) ○「정보통신망법」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(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범죄)를 범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준하여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·확정되는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▶국가공무원법 제33조	1.비중요
2	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 (교육부)	1.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해제 요청 기준 및 절차(신설) ○ 개발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또는 지구 내 전체 세대의 80%이상이 입주완료한 경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검토 - 다만, 해당 지구 내 학교설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 ▶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3조	1.비중요
3	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설정(강화) ○ '마감제, 경화제, 경화촉진제, 운동용품 세정광택제'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(화학물질 등) 및 표시기준을 적용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제5조 2.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·표시기준 설정(강화) ○ '세정제, 제거제, 광택코팅제, 특수목적코팅제, 살균제'의 관리대상 범위 확대(용도 추가) 및 안전·표시기준 설정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(강화) ○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'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' 강화 - 제품의 용기,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함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제5조	
4	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2752)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휴대용 전기차충전기 국제표준 부합화(신설) ○ 기계적 충격·충돌에 대한 내성, 노화에 대한 내성, 저온 보관시험, 진동 및 충격시험 등의 요구사항 추가 ▶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2752) 전체	1.비중요
5	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1851-1)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기차 충전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국제표준 부합화(신설) ○ 감전보호, 케이블 어셈블리, 과부하 및 단락 보호, 표시사항 및 설명서의 요구사항 추가 ○ 이동식 충전기의 KC인증을 위한 내충격성, 내진동 및 충전 중 구속여부 등의 시험기준 추가 ▶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1851-1) 전체	1.비중요
6	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(강화) ○ 의원급을 제외한 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▶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	1.비중요
7	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(강화) ○ 의원급을 제외한 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▶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부정행위 검증·조치 관련 세부사항(신설) ○ 익명제보의 검토, 예비조사, 본조사, 이의신청 등 규정 ▶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5조,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	1.비중요
9	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여성가족부)	1.지원시설의 입소·연장·퇴소 절차(기준) 및 보고의무(신설) ○ 지원시설에 인신매매등피해자가 입소, 입소기간 연장 및 퇴소 시 지원시설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 등 ▶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,제8조제9조 2.평가의 기준과 방법(신설) ○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*과 평가방법**을 정함. * 시설환경의 적정성, 종사자의 전문성, 서비스 만족도 등 **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, 연구기관 등에 의뢰 ▶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
10	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여성가족부)	1.지원시설의 지정·변경·지정취소(신설) ○ 지원시설의 지정, 변경절차 및 요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규정 ▶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,제29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지원시설의 설치 ·운영(신설) ○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타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(입지조건, 시설유형별 · 보호 인원 수별 적정규모등)을 규정 ▶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3.신고의무 대상 시설(신설) ○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기관에 착취에 취약한 계층(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아동·청소년 등)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*을 추가 *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외국인력상담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▶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	